

정 관



사단법인 국제복음선교회(WEM)

원본대조필	
-------	--

사단법인 국제복음선교회 정관

1991. 05. 24 제정

1998. 02. 07 개정

2009. 02. 09 개정

제 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회는 사단법인 국제복음선교회(Worldwide Evangelical Mission)라 칭한다.

제2조(소재지)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(목적)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그 사랑을 실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성격) 본회는 초교파적이며 국제적으로 다른 선교단체 및 교회와 협력하여 선교한다.

제5조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해외선교사의 선발 및 훈련
2. 해외선교사의 파송 및 지원
3. 세계선교를 위한 정보 수집 및 제공
4. 선교정보 간행물의 발간
5. 필요시 교육기관, 의료기관, 구제기관 및 선교사 훈련원 등의 설립 운영과 사회봉사사업
6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장 회 원

제6조(회원자격, 종류, 절차)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교리를 믿고 세계선교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교회 또는 단체를 회원으로 한다.

②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
③본회의 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써 회원이 된다.

제7조(회원권리)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 특별회원,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
제8조(회원의무)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반규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원의 탈퇴) 본회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의 신고를 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를 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원의 상벌)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,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 3장 임 원

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이사 5인 이상 6인 이내(이사장을 포함한다)
3. 감사 1인

제12조(임원의 선임 및 제한)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 민법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3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본회의 목적에 위해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4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감사는 다음직무를 수행한다.

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

-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6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이사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에는 총무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장 총 회

제17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- 제18조(구분 및 소집)**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-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제19조(총회소집의 특례)**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- 2.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- 3.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- 제20조(의결정족수)** ①총회는 정회원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-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21조(총회기능)**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-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-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- 5. 사업계획의 승인
 - 6. 기타 중요사항

- 제22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**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5장 이 사 회

제23조(이사회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4조(구분 및 소집)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이사회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5조(이사회소집의 특례)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6조(의결정족수)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이사회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27조(이사회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7.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
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9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6장 재 산 과 회 계

제28조(재산의 구분)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“별지1”과 같다.
 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②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9조(기본재산의 처분등)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, 증여, 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30조(예산편성) 본회의 예산편성은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31조(결산) 본회는 매 회계연도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
제32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3조(수입금)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헌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34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5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7장 사 무 부 서

- 제36조(사무부서)**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둔다.
 ②사무부서에는 간사 1인 이상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③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 ④사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 8장 보 칙

- 제37조(법인해산)**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제38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9조(업무보고)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0조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1991. 05. 24)

제1조(시행일) 이 변경된 정관은 결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8. 02. 07)

제1조(시행일) 이 변경된 정관은 결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9. 02. 09)

제1조(시행일) 이 변경된 정관은 결의한 날부터 시행한다. (끝)

사단법인 국제복음 선교회 재산

1. 기본재산

부동산: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44번지

- 대지: 171.5m²

- 건물: 연건평 1031.94m² 중 건평 515.97m²

동산: 8억(은행 예치)

2. 보통재산

부동산: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18 부영아파트 제107동 제7층 제 701호

(1999년 4월 8일 매입)